7.3.2 깎기작업

- (1) 붕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.
- (2) 깎기면 최상부에는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깎기면이 높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충분한 폭의 소단을 설치하여 야 하며 깎기면으로 우수 등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소단은 깎기면 방향으로 적정한 기울기를 두어 형성하고 필요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깎기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에 비닐덮기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깎기면이 암반으로서 암질이 불량한 경우는 록볼트, 넷트 설치 등의 방호시설을 하여야 한다.
- (5) 깎기면이 높은 경우에는 굴착장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등판용 가설 도로를 설치하되 적정 노폭을 유지토록하고 침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.
- (6) 굴착작업 시 장비의 전도 및 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이 평탄하고 다짐이 양호한 위치에 정치시킨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7) 불안전한 급경사면에 옹벽설치를 위한 굴착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비탈면의 지질, 지층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기초 및 벽체 구조물을 축조 하고 배면에는 배수가 잘 되는 재료로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.
- (다) 깎기 비탈면에 낙석의 우려가 있거나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록볼트, 숏 크리트. 넷트 등의 비탈면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.

7.3.3 지하굴착작업

(1) 굴착부지의 여유가 없어 지층상태에 따른 굴착기울기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층, 지질 상태가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.